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70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 7. 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 13.]
대표 이메일 rlythx@a2dcorp.co.kr

정 보 공 개 서

[(주)올투딜리셔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

[(주)올투딜리셔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5층 (문정동,화엄타워)

[가맹본부 대표전화] 1566-4691

[가맹본부 대표팩스] 070-7875-2222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프랜차이즈사업본부 / 1566-469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올투 딜리셔스	유부 빛는 마을 외 1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7, 5층 (문정동, 화엄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7.18	2014.07.22	정한석	1566-4691	070-7875-2222
	법인등록번호	110111-5469641	사업자등록번호	113-86-8768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한석	대표이사	2018.3.~2021.03.	(주)올투딜리셔스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21.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대표이사	
	홍동휘	사내이사	2021.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사내이사	경영 지원
	한기확	감사	2021.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감사	업무 감사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유부 빛는 마을”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유부 빛는 마을	
상 호	유부 빛는 마을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유부 빛는 마을	출원번호 : 4020220119737 등록번호 : 4021609090000
	다채로움을 담다, 유부빛는마을	출원번호 : 4020220127156 등록번호 : 402162617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9,808,964	12,632,785	-2,823,820	33,626,926	137,428	-771,697
2022년	9,366,878	11,749,027	-2,382,149	29,031,534	-1,312,340	-1,371,151
2021년	6,942,873	9,053,869	-2,110,995	22,740,678	-2,385,537	-2,250,762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한석	대표이사	2018.3.~2021.03.	(주)올투딜리셔스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21.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대표이사	
	홍동휘	사내이사	2021.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사내이사	경영 지원
	한기확	감사	2021.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감사	업무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조강희	사내이사	2022.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사내이사	
	김재우	비상무이사	2022.03.~현재	(주)올투딜리셔스 비상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2	26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올투딜리셔스	가맹사업 경영	2022.7.22. ~현재	유부 빛는 마을(등록번호: 20220705)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롤리볼리(상호변경전 삼층매점)(등록번호:20221073)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도제(등록번호:20231387)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유부 빛는 마을	상표권	2024. 2. 28. 등록	출원번호 : 4020220119737 등록번호 : 4021609090000	(주)올투딜리셔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유부 빛는 마을] 가맹사업 현황

1. 유부 빛는 마을을 시작한 날 : 2022년 09월 07일

2. 유부 빛는 마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유투딜리셔스	유부 빛는 마을	정한석	2022. 09. 07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7, 5층 (문정동,화엄타워)

3. 유부 빛는 마을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유부 빛는 마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유부초밥, 김밥, 라면, 우동 비빔면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유부 빛는 마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	7	-	3	3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2	2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3	-	3	3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유부 빛는 마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3	4	-	-	-	7
2022	-	3	-	-	-	3
2021	-	-	-	-	-	-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3.12.31.	2022.12.31.	2021.12.31.
가맹본부	(주) 올투딜리셔 스	유부빛는마을	20220705	일식	7/0	3/0	0/0
		롤리볼리	20221073	분식	0/0	0/0	0/0
		도제	20231387	일식	0/32	0/32	0/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유부 빛는 마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유부 빛는 마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2023. 12. 31.기준)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	32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연도	광고비	판촉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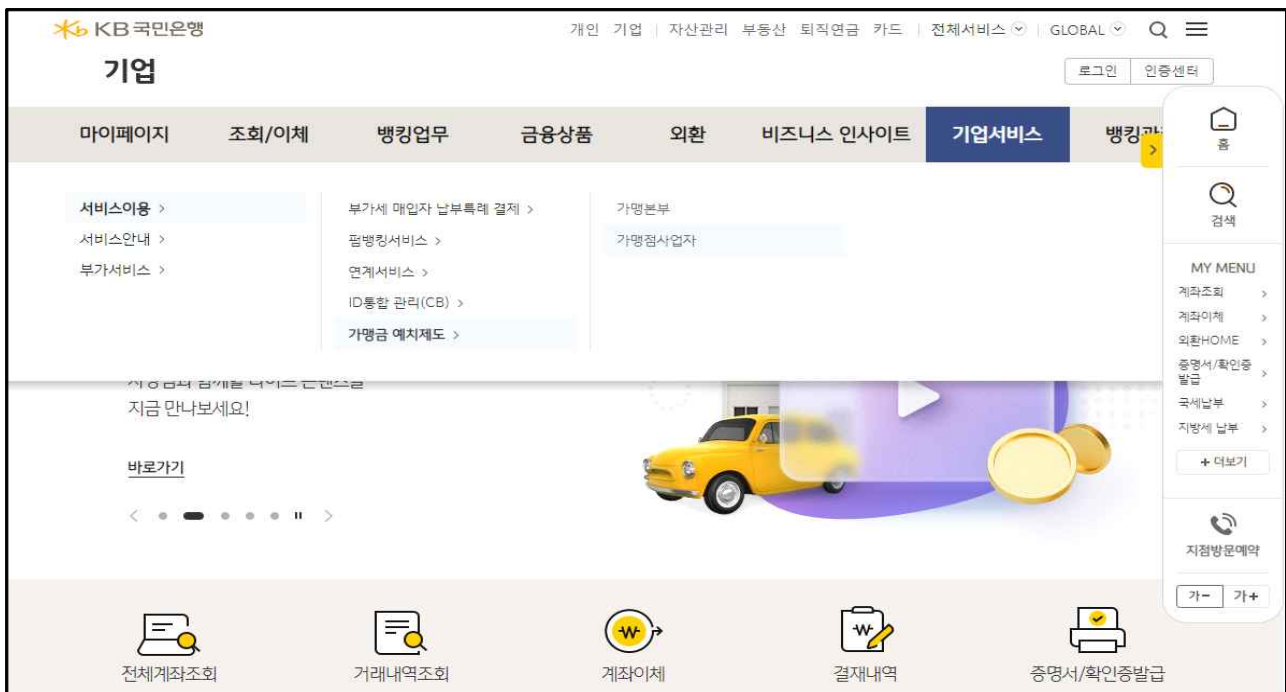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직통전화번호
국민은행	판교벤처밸리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우림더블유시티 103호	031-589-5717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기업을 클릭하고 바뀐 화면에서 메뉴의 기업서비스에서 가맹금예치제도를 찾아 클릭한 후 나오는 가맹점사업자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맹금예치금 예치를 클릭한 다음 로그인한 후 (주)올투딜리셔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유부 빛는 마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개점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 후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및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합 계	10,800
가 맹 비	5,500
교 육 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4,570~ 67,870				33㎡ (10평기준)
인테리어	가맹본부	27,500	2,750	계약 시 50%, 완공 후 1일 내 잔금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4,400 ~7,700		계약 시 50%, 완공 후 1일 내 잔금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크기 및 자재에 따라 변동
주방기기		14,300		설치 3일전	미설치 시	
주방집기		8,800		공급 3일전	미공급 시	
초도물품		5,500		공급 3일전	미공급 시	
POS / 키오스크		4,070		공급 3일전	미공급 시	프로그램사용료 푸드테크:22,000원 오케이포스:11,000원 위메이프오:21,890원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3.3㎡당 일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의 감리비(인테리어 노하우 제공)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 냉난방기, 가스설비, 전기승압, 덕트공사, 의탁자, 통신설비, 소방시설, 오디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파사드, 외장공사, 인허가 등의 사항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이나 가맹점사업자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쇼케이스, 식기세척기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별도 품목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경비, 출장비, 배송비, 파견비 등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자점매입을 허용한 주방기기 및 주방집기, 일부 비품 등은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 가맹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직접 구입 가능하며 이 경우 안전성, 품질, 규격등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 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공중위생과 관련된 질병이 없을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하고, 공중위생과 관련된 질병이 없을 것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고용시 부모님 (보호자)의 동의 필수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유부 빛는 마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자세한 내용은 'Ⅶ-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월 매출액의 4.4%	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 반환 안됨.
지연이자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273,508원	전용품목은 가맹본부의 마진이 없고, 소량의 범용품목만 마진이 있어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25%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필요시	문의 : (1566-4691)
위생청소상태 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품질관리	가맹점 제품의 품질상태 점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유부 빚는 마을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 전액과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 전액,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와 당사가 체결한 가맹계약이 종료(해지 포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에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서 귀하에게 제공 또는 대여한 장비, 시설, 물품, 전산시스템, 운영매뉴얼, 지침 등 영업관련 자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소정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당사의 영업표지가 적용된 모든 물품 및 시설에 영업표지를 제거, 폐기, 개수를 통해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사의 가맹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의 부담으로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유부 빛는 마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거래형태 별지 주방기기, 주방집기, 초도물품 내역에서 ‘권장 및 자율’로 기재된 물품은 시장 가격에 따라 귀하의 책임하에 귀하가 개인 별로 자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성, 품질, 규격등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유부 빛는 마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유부 빛는 마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2) 당사가 유부 빛는 마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수용, 매장 운영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삭제·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용역의 변경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기간에 기재합니다. 정기 변경기간 이전 가맹계약 발생시 상품·용역의 내용이 정보공개서와 다른 경우 계약시점에서 현재 사용중인 메뉴판 메뉴리스트의 판매가능한 상품·용역의 기준으로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가격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매장 운영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로 인하여 메뉴의 권장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부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유부 빛는 마을 도제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	계약 체결 시 지도로 표시 (표시된 지도에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인 날인)
특수상권 내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	

특수상권: 영화관, 백화점,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연금매장, 할인점, 아울렛, 쇼핑몰,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지하상가, 공항, 호텔, 리조트, 경기장 등.

만약, 귀하의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 입점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에 대한 입점권은 귀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귀하가 거절할 경우 당사는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입점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부빛는마을의 가맹점 사업자간의 영업지역 충돌로 인한 과열경쟁과 갈등등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호 협의하에 가맹계약시 영업지역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급적 가맹본부와 서로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으로 유부빛는마을의 타 가맹사업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간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목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유부 빛는 마을'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직영점	도제	유부초밥	일부메뉴 및 가격 다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가 온라인, 홈쇼핑 등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비고
온라인	SSG	www.ssg.com	냉동유부초밥: 명란마요, 제육김치, 우삼겹, 닭갈비	냉동 완제품 판매	도제
온라인	배달의민족: B마트	www.baemin.com	냉동유부초밥: 명란마요, 제육김치, 우삼겹, 닭갈비	냉동 완제품 판매	도제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직영점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유부 빛는 마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0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0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유부 빛는 마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7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0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1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7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8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3조 및 제24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6조 물품의 하자과 책임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7조 원·부재료 등 공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9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0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2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5조 영업의 상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9조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그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566-469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영업개시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서면으로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 사전 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유부 빙는 마을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유부초밥, 김밥, 우동·라면·비빔 면류 등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566-469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유부 빙는 마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주 5일 이상 / 월 25일 이상	문의 (1566-46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매장 입점 지역의 특성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이를 변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문의 (1566-4691)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 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유부 빛는 마을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 가맹점사업자 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 월 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광고 실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동 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 부담	제작비용 부담	행사계획 공고→ 가맹점 부 담액 제시 → 행사에 따른 분 담금 납입	판촉 실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다만, 70%이상 미동의 시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제작비용 이외 비용 협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또는 위약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5조 제3항(자점매입 금지)를 위반하여 지정거래처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매 1일마다 금일십만원(₩100,000)씩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제3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8조(영업)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계약기간 중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전환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제4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0조 제2항(영업표준화)을 위반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매 1일마다 금이십만원(₩200,000)씩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제5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8조(계약종료 후 조치)를 위반하여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매 1일마다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제6항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39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중 제3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제7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5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9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39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8~25(14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3(2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5(6일)	
오픈 준비	- 주방기기 입고	D-2	
오픈 준비	- 주방집기/초도물품 입고	D-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개별사정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1566-469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 자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유부 빚은 마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유부 빛는 마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 전 필요한 제반교육 및 조리/서비스 교육 등	실습 및 이론교육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교육		개점 후 개별 협의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점 후 개별 협의	선택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유부 빛는 마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6일(48시간)	최초 가맹금에 포함 (1개점 교육인원 2인)	최초 계약 시 필수이수 (가맹점 현장교육을 포함)
수시 교육	개별 협의	1인 1일 기준/1,10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협의	1인 1일 기준/1,10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가맹점사업자 신청 시

신규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신규 교육에서 정한 인원 2인 외에 교육 인원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비용은 1인에 일금일백육십오만원(W1,65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계약하지 및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유부빛는마을의 직영점은 없습니다.

[별첨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주방기기 및 기물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원,부재료 리스트 (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 메뉴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